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8. 11.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용어 및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여 당초 감면취지에 부합시키고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등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감면되도록 명확하게 함(안 제2조 및 제3조)
-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7조 및 제16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 제한구역안에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 주택에 대하여 취득 후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함(안 제10조)
-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감면대상 및 추정제외 사유를 명확하게함(안 제11조)

-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와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분리하여 조항을 신설함(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 「화물유통촉진법」에서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률명칭이 변경되고,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3조)

3. 조례 개정안 :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5.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2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0조 본문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중 “재산세”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 2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 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

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로 한다.

제23조 제목 중 “유통산업지원”을 “물류산업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 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illegible]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1. ~ 4. (생략) ③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제2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2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당초 취지대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단서 조항 신설
1. ~ 4. (생략) ②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1.~2. (생략)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 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7 (생략)	제7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1.~2. (현행과 같음) 3. 국토해양부 ----- ----- 4.~7 (현행과 같음)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명칭변경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10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본문 생략) 1. ~2. (생략)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신설>	제10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삭제>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 오지개발사업 관계 법령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 및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른 개량주택에 대해서도 감면 포함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시행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 ----- ----- ----- -----	○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과 특별·광역시 지역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까지도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지역간 형평성 제고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 ----- ----- ----- ----- ----- ----- ----- ----- ----- -----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 ----- ----- ----- -----. 1.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 ----- ----- ----- ----- ----- ----- ----- -----. 2. ----- ----- ----- ----- ----- ----- -----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생략)	----- -----. 2. ----- ----- ----- ----- ----- -----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 3. (현행과 같음)	
제12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	제12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렇지 않다.	○ 제12조의2 규정에서 아파트형 공장 및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분리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 설>	제12조의 2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규정을 제12조에서 분리하여 규정하고 감면대상을 “사업용”에서 “아파트형공장용”으로 구체화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 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16조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본문 생략) 1. ~ 2. (생 략)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 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 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 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 액으로 한다.	제16조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본문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 ----- ----- -----국토해양부장관----- ----- ----- ----- ----- -----.	○ 정부조직법 개정 으로 명칭변경
제19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 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거 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 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 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2. (생 략)	제19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 ----- -----주택----- ----- ----- -----. 1. ~2. (현행과 같음)	○ 지방세법 체계 의 통일성을 유지 하기 위하여 “주 거용부동산”→ “주택”으로 용어 변경
제21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 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 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 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 (「지방세법」 제112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신 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 소세를 면제한다.	제21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 -----제17조 제1호 부터 제7호 까지의 ----- ----- ----- ----- ----- ----- ----- -----.	○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개정 으로 인용 조문 수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23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 <u>화물유통촉진법</u>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3조 【 <u>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u> 】 ----- 「 <u>물류정책기본법</u> 」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u>물류시설운영업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u> ----- ----- -----.	○ 법률명칭 변경과 비영업 창고용 토지가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감면대상을 명확히 함

관 련 법 령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

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